

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180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0. .

제 안 자 : 오승철 의원

1. 수정이유

- 원안에 따라 설치되는 ‘순환경제촉진위원회’의 구성,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위원회의 구성, 직무,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7조)

3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구매”를 “구매하도록 노력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
3. 순환경제 교육,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,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

원의 위촉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
1.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

2.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환경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,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,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

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하남시 자원순환집행계획은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0조(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)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<u>구매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u> 2. <u>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</u> 3. <u>순환경제 교육, 홍보에 관한 사항</u> 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에 따른 하남시 2050 탄소중립</p>	<p>제10조(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) ① ----- ----- ----- <u>구매하도록 노력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u> 2. <u>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</u> 3. <u>순환경제 교육, 홍보에 관한 사항</u> 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
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환경제 사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.

1.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
2.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환경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

<신 설>

<신 설>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,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,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

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

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9조·제20조 (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)

<신 설>

제15조·제16조 (생략)